

심 사 보 고 서

【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】

1996. 10. 4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9. 10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9. 23
- 라. 상정일자 : 1996. 10. 2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시민과장 한기택)

가. 제안 이유

- 그동안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서만 발급되던 결혼증명서가 해당 호적관청에서 직접 발급토록 개선됨에 따라 국제결혼증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개정으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것을 앞으로 서산시 조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골 자

-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분. 기준. 요액 및 비고중(증명) "3. 신상에 관한 증명"란에 국제결혼수수료 1,5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"7. 문화공보관계"란에 요율표의 액을 허가, 허가증제교부, 등록, 신고되는 사항의 구분에 따라 10,000원~300원의 징수 근거를 정함(별표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개정 조례안은 호직관청에서의 국제 결혼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증명수수료 규정의 신설과
- 공연법시행령개정('96.6.29) 및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('96.6.4)에 따라 종전 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앞으로 서산시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었음

5. 토 론

- 없었음

6. 소수의견

- 없었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93 호
의결년월일	1996. (제 회)

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년월일	1996. 9. / 0 .

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93

제출년월일 : 1996. 9. 10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그동안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서만 발급되던 결혼증명서가 해당 호적관청에서 직접 발급도록 개선됨에 따라 국제결혼증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,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개정으로 종전 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것을 앞으로 서산시 조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려는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분·기준·요액 및 비고중(증명) “3. 신상에 관한 증명” 란에 국제결혼수수료 1,5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“7. 문화공보관계” 란의 요율표의 액을 허가, 허가증제교부, 등록, 신고되는 사항의 구분에따라 10,000원~300원의 징수 근거를 정함 [별표].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분·기준·요액 및 비고중(증명) 3. 신상에 관한 증명란의 “①” 다음에 “②”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표 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등) “7. 문화공보관계”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구분	기준	요액	비고
② 국제결혼증명	1통	1,5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1] 제증명수수료요일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요액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증명) 3. 신상에관한증명 ① 부양사실증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u>(신설)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준	요액	비고	(증명) 3. 신상에관한증명 ① 부양사실증명	1봉	300원		<u>(신설)</u>				<p>[별표1] 제증명수수료요일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요액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증명) 3. 신상에관한증명 ① 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② <u>국제결혼증명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봉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500원</u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준	요액	비고	(증명) 3. 신상에관한증명 ① -----	---	-----		② <u>국제결혼증명</u>	<u>1봉</u>	<u>1500원</u>	
구 분	기준	요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(증명) 3. 신상에관한증명 ① 부양사실증명	1봉	300원																							
<u>(신설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준	요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(증명) 3. 신상에관한증명 ① -----	---	-----																							
② <u>국제결혼증명</u>	<u>1봉</u>	<u>150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

제 증 명 수 수 료 요 율 표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〈 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등 〉			
7. 문화공보관계			
①공연장 설치허가.	1 건	10,000원	
②공연장설치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	1 건	2,000원	
③공연장설치 허가증 재교부신청	1 건	300원	
④음반·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의 등록 신청	1 건	1,000원	
⑤음반·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	1 건	500원	
⑥음반·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	1 건	500원	
⑦인쇄소 등록신청	1 건	500원	